

2014년 4월 8일

윤상직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대한민국 서울

윤상직 장관 귀하,

금일자 한국-호주 자유무역협정(“협정”)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7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과 제11장(투자)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,

- 가.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
- 나.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
- 다.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
- 라.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, 그리고
- 마.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

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11.9조(이행 요건)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, 협정의 목적상, 그러한 제한이 제7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,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(법률 제11998호, 2013.8.6)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7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,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7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11.3조(내국민 대우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「주세법」(법률 제11873호, 2013.6.7)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.9조(이행요건)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7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7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앤드류 룩

2014년 4월 8일

앤드류 룩
통상투자부 장관
국회의사당
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2600

앤드류 룩 장관 귀하,

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“금일자 한국-호주 자유무역협정(“협정”)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7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과 제11장(투자)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,

- 가.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
- 나.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
- 다.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
- 라.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, 그리고
- 마.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

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11.9조(이행 요건)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, 협정의 목적상, 그러한 제한이 제7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,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(법률 제11998호, 2013.8.6)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7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,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

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7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11.3조(내국민 대우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「주세법」(법률 제11873호, 2013.6.7)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11.9조(이행요건)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7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7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”

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윤 상 직